2024년 자율관리어업 육성 시행계획

2023. 12.



순 서

I. 수립 배경 ···································
Ⅱ. 2023년 추진성과2
Ⅲ. 2024년 시행계획 추진방향 5
Ⅳ. 2024년 세부 시행계획6
1. 자율관리어업 추진체계 개편 6
2. 전문성 강화를 통한 내실화7
3.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기반 구축 8
Ⅴ. 2024년 투자계획10

Ⅰ. 수립 배경

- □ 자율관리어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시행('21.2.19)에 따라 종합계획('21.5)* 수립
 - * 동법 제5조에 따라 자율관리어업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공동체에 대한 지속적·체계적 지원 방안, 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 계획 수립
- □ 「제1차 자율관리어업육성 종합계획('21~'25)」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4년도 시행계획 수립(동법 제5조제3항)
- □ 「제1차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주요내용
 - o 자율관리어업 재도약을 통한 풍요로운 어촌 실현을 위해 **4개 주요과제**, **12개 세부 추진과제** 추진
 - 자율관리어업 공모제도 및 우수공동체 관리 방안을 도입하여 **추진** 체계 개편을 통해 **우수공동체 비율 확대**('21년 30%→'25년 35%)
 - 젊은 지도자 육성, 전문강사 육성, 찾아가는 자율관리어업 학교운영을 통해 **자율관리어업 전문성 강화**를 통한 **내실화 도모**
 -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기반 구축 및 공익적 역할을 강화 할 수 있는 정책 추진

〈 제1차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

비 전

자율관리어업 재도약을 통한 풍요로운 어촌 실현

기본방향

- ❖ 수산자원보전 및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율관리어업 육성
- ❖ 자립형 우수공동체 확대와 대내·외 긍정적 인식 제고
- ❖ 자율관리어업 내실화를 위한 체계 개편을 통해 재도약 실현

주요 추진 과제(4개) · 세부 추진

세부 추진 과제(12개)

■ 자율관리어업 추진 체계 개편	① 자율관리어업 공모제도·우수공동체 관리 방안 도입 ② 자율관리어업 수익모델 발굴 ③ 어선어업의 자율관리 어업 참여 확대
2 자율관리어업 전문성 강화를 통한 내실화	① 젊은 지도자 육성 ② 자율관리어업 전문 강사 육성 ③ 찾아가는 자율관리어업 학교 운영
3 자 율 관리어업 활성화 기반 구축	① 지역별 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 ② 자율관리어업 정기적 실태조사 및 연구 ③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자 율 관리어업 공익적 역할 강화	①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함께하는 날 지정 ②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사회적 기업 육성 ③ 공동체와 지역학교의 상생 프로그램 추진

Ⅱ. 2023년 추진성과

1 주요 성과

□ 자율관리어업 추진체계 개편

- o 수산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선어업의 자율관리어업 참여 확대 방안 마련
 - 자율관리어업 참여율이 저조한 어선어업 공동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자율관리어업 개선방안 연구용역 실시('23.1~11)
 - * 현황 및 참여 저조 문제점 파악, 해결방안 등 추진방향 설정
- 전국 공동체 구성·등록현황, 공동체 생산·판매 현황 등 실태조사* 추진 및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자율관리어업 발전 방안 도출
 - * (실태조사) 전국공동체 1,126개소('22)를 대상으로 조사
 -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사항 검토, 평가방법 등 논의

② 현장・맞춤형 교육 추진

- 신규 및 활동 부진 공동체에 민간 컨설턴트를 활용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 확산 교육, 국·내외 성공사례 현장 교육, 공동체 실태조사 등 질적 성장 도모
 - (민간 컨설턴트 운영) 12명 / 204개소(612회)
 - (지자체 확산 교육) 11개 시·도 / 484개소(6,490명)
 - (성공사례 현장교육) 15회(474명)
 - (해외 우수사례 교육) 1회(노르웨이, 14명)
 - (공동체 실태조사) 1,126개소 전수조사(1,086개소/96.5%)

③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구축

- 평가매뉴얼, 현지점검단, 평가위원회를 통한 공동체 등급 결정 및 우수공동체 선정, 육성지원으로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도모(1,125개소)
 - (평가위원회 개최/현지점검) 1회(9월)/2회(7월, 8월)
 - (선진공동체 실태조사) 1회/선진공동체 5개소
 - (우수공동체 선정·지원) '23 95개소*, '24 108개소**
 - * ('23) 95개소(선진 2, 모범 49, 협동 35, 참여 9), 5,055백만원
 - ** ('24) 108개소(선진 -, 모범 50, 협동 49, 참여 9), 4,951백만원

④ 공동체 현안문제 해결 및 소통채널 마련

- 민간차원에서 공동체·지역·업종 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자율 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를 통해 정책방향 설명, 건의사항 청취 등 소통의 장 마련
- (자율조정협의회 운영) 12회/조정과제 3건(조정완료 2건)
- (제16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1회/2,000명(어업인 1,700, 수산관계기관 300)

5 공동체 성과 홍보를 통한 참여의식 제고

- 우수공동체의 추진성과 영상물 및 소식지 발간 등을 통해 자율관리어업 홍보 및 참여 활성화 도모
- (홍보영상물 배포) 어업인 교육 활용, 유튜브 등 홍보
- (소식지 발간) 12회/24,000부

2 미흡점

① 공동체 활동 지속성을 위한 우수공동체 관리 방안 마련

- **자립공동체 이상 등급의 공동체**의 경우, 활동실적 및 점수 등을 통하여 육성사업비 지원 추진
 - 공동체 육성사업비 지원 이후 자율관리어업 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짐에 따라 **지속적 활동 유지**를 위한 **동기부여 필요**
 - (문제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의존에 따른 공동체 자립의지 부족, 단순 평가점수 확보를 위한 형식적 공동체 활동
- 평가 점수가 아닌, **자율관리어업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사업**에 대하 여 **직접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자율관리 **사업 공모제도** 실시 필요
- 육성사업비로 추진이 어려운 **다년도·대규모** 자율관리 기반구축 **사업**을 공동체 직접 **공모·평가를 통한 지원 실시**
- (문제점) 공동체 **구성원 고령화**로 인하여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대규모 사업추진 시 성과목표 및 달성, 사후관리에 대한 **이행능력 검토** 필요

2 자율관리어업 내실화 강화

- 권역별 **공동체 교육 컨설팅**을 실시하여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의식개혁**, 공동체 위원장 **리더십 향상** 및 **공동체 운영 지도** 등 교육 실시
- (문제점) 참여의지가 없거나 평가 점수가 낮은 비활동 공동체가 많아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전문교육 효과 저하
-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이론 및 현장 이해도 교육 등을 통한 **전문** 강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문제점) 자율관리어업 전문 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 인력풀 미흡

Ⅲ. 2024년 시행계획 추진방향

비 전

자율관리어업 재도약을 통한 풍요로운 어촌 실현

24년 목표 ● 우수공동체 비율 확대
 '21~'23년 평균 33% → '24년 34%(383개소)
 * 제1차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 목표: '25년까지 35%

주 요 정 책

자율관리어업 추진체계 개편

- ① 어선어업 공동체 참여 확대
- ② 제도개선을 위한 사전조사
- ③ 자율관리어업 관리방안 및 제도개선

전문성 강화를 통한 내실화

- ① 체계적 교육 확대
- ② 현장 맞춤형 교육 추진
- ③ 공동체 현안문제 해결 및 소통채널 마련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기반 구축

- ① 공통체 평가를 통한 우수공동체 지원
- ② 공동체 협력 강화
- ③ 자긍심 고취로 참여의식 제고

Ⅳ. 2024년 세부 시행계획

1 자율관리어업 추진체계 개편

① 어선어업 공동체 참여 확대

- 어선어업공동체의 자율관리어업 참여 확대를 추진하여 수산자원
 관리 효율성 증대
 - 어선어업 공동체의 자율관리 활성화를 위한 평가기준 정비 및 어선어업 공동체 지원사업 발굴

② 비활동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정비

- 참여의지가 없거나 활동실적이 부진한 **공동체 정비 제도**를 마련 하여 **내실화**된 **자율관리어업** 수행
 - 비활동 자율관리어업공동체로 인해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역량 하락 및 사회적 인식 악영향 발생 우려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평가에 투입되는 노력, 시간 및 비용이 과다 하게 소요되어 비활동 공동체로 인한 평가자의 업무 피로도 증가

③ 자율관리어업 평가 및 지원체계 개선

- **관련 법률, 훈령 등의 재검토** 및 **워크숍, 보조사업 점검**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 정비 및 개선안 마련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활동실적 평가체계 전환(실적중심→성과중심) 및 평가항목 간소화
 - * 「자율과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평가항목 및 배점 변경, 평가 기준 해석 표준화, 평가항목 중복성 제거, 사업내용 검토 등)

전문성 강화를 통한 내실화

① 체계적 교육 확대

2

- 지역별 민간 컨설턴트를 통해 자율관리어업 주요정책 및 수산 자원관리 방안 등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역량 강화('24.3~12)
 - * ('24) 12명, 204개소 / 대상 공동체별 연간 1~3회 방문하여 컨설팅 실시
- 공동체 운영, 자율관리어업 활동관련 서류 작성 요령, 평가 및 사업 추진 관련 사항 등을 교육
- **공동체 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율관리어업법 주요 내용, 훈령, 정책 방향 및 '24년 사업추진 계획 등을 교육
 - * '24.7~8월 실시(2회) / 지자체, 수협 및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평가 담당자
-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의 확산 및 정책방향 설명을 위하여 지자체 중심의 교육 실시(11개 시·도, 140백만원)

② 현장 맞춤형 교육 추진

- 신규공동체 및 활동이 부진한 공동체가 우수공동체를 직접 방문하여 성공사례를 교육받고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성공사례 현장 교육' 추진
-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에서 시·도별 1~2개소씩 배정하여 연간 사업추진 계획 수립('24년 15개소)
- 신규 및 평가점수 500점 미만인 공동체가 '22~'23년 우수공동체 (연 3~4개소 선정)로 선정 된 공동체를 방문하여 현장감 있는 교육 실시
- 자율관리 공동체 지도자 및 구성원 **해외우수사례 교육**
- 외국의 자원관리 및 경영 우수사례 등을 직접 견학하게 함으로써 자율관리 어업 참여 공동체 질적 향상 도모
 - * 연수인원 총20명(우수공동체 12명, 수산회 및 연합회 3명, 해수부, 지자체, 수협 5명)

③ 공동체 현안문제 해결 및 소통 채널 마련

-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공동체간·지역간·업종간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당사자 간 협의와 토론을 통해 해결하도록 조정하는 자율 조정협의회 운영('24)
 - * 위원 19명 구성/총괄협의회 및 신규 분쟁조정과제 발굴 조사·간담회 등 연12회 개최
 - * 근거 :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정책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자율관리** 어업 정보화 시스템(www.korjayul.or.kr)의 홍보·관리 강화(연중)

지율관리어업 활성화 기반 구축

3

① 공동체 평가를 통해 우수공동체 지원

-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동체 등급 및 등급별 순위 결정, 우수 공동체 선정 및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사업비 지원
 - * 공동체 평가위원회 구성·운영('24.5~6월, 15명 이내)
 - * 근거 :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
- 지자체 평가 결과에 대한 점검을 위해 지자체, 평가위원 및 민간 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지역별 교차 점검**('24.7~8)
- ^①'24년 공동체 등급 최종 결정 및 우수공동체 선정('24.8) ^②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지원 대상 결정('24.8)
-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를 지원받은 공동체에 대한 운영 실태를조사하여 사후관리 강화('24.下)
 - * 연 1~2개소를 선정하며, 4억(국비) 이내 지원

② 공동체 협력 강화

- 권역별 워크숍(5회*)을 통해 정책방향 설명, 우수사례 발표, 건의 사항 청취 등 소통의 장 마련
 - * 권역별 구분 : 동해권, 서해권, 남해권, 전남권, 제주권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함께 하는 날(가칭)***을 지정하여 전국단위로 어장청소, 잘피 숲 조성 등 추진하여 **수산자원 관리·조성 홍보**
 - * 바다식목일, 바다의 날 등 기념행사 시 연계 행사로 추진

③ 자율관리어업 자긍심 고취로 참여의식 제고

- 자율관리 홍보 영상물 및 소식지 발간 등을 통한 자율관리 어업 참여 활성화 도모
- 우수공동체 영상물을 공동체, 지자체, 관계기관 등에 배포하여 어업인 교육 활용 및 일반 국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유튜브 등을 이용 홍보 추진
- 자율관리어업 정책과 우수사례 등을 홍보·전달하는 자율관리어업 소식지 발간을 통해 자율관리어업 참여의식 확산 (매월 2,000부/월1회)

Ⅴ. 투자 계획

- □ '24년도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 투자 총액은 128.8억원
 - (육성사업비 99억원) 자원관리 등 활동실적 평가 결과 우수공동체에 대한 지원으로 참여의식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확산교육비 1.4억원) 미 참여 어업인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신규· 부진공동체에 대한 교육 추진
 - (활성화 지원 8.2억원) 자율관리어업 내실화를 위한 컨설팅, 교육·홍보 추진
 - (운영비 2억원) 우수공동체 홍보물 제작, 지정패 제작 추진
 - (유해생물구제-해파리 18.2억원) 해파리 구제^{*}를 통한 어업인 피해예방
 - * 과목구조개편에 따른 반영(수산물위생관리→자율관리어업 육성)

(단위: 백만원)

ਮੇ ਨੀ ਸ਼ੀ	게이벼	연차별 투자액					
사 업 별 	재원별	2022	2023	2024			
	계	12,724	11,330	12,885			
·호 ·····lì	국비	6,972	6,275	75 7,934			
총계	지방비	4,602	4,044	3,961			
	자부담	1,150	1,011	990			
	소 계	11,504	10,110	9,902			
1 기이키기시어 이러지어	국비	5,752	5,055	4,951			
1.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지방비	4,602	4,044	3,961			
	자부담	1,150	1,011	990			
2 기 0 기기시어 정치 기 0	소 계	140	140	140			
2.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국비	140	140	140			
그 기 0 기기시어 참 사원 기이	소 계	819	819	819			
3.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지원	국비	819	819	819			
4 1 0 - 1 - 1 A A A A A A	소 계	261	261	204			
4. 자율관리어업 운영	국 비	261	261	204			
■ ○ 위 제 □ □ 제 (의 등 기)	국 비	-	1,820				
5. 유해생물구제(해파리) 	소 계	-	-	1,820			

참고 1

자율관리어업 관련 통계 현황

□ 연도별, 유형별 참여공동체 현황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월	'23.10월
공동체(개소)	1,160	1,170	1,108	1,120	1,133	1,128	1,126	1,128
(전년대비 증가율,%)	(2.6%)	(0.9%)	(-5.3%)	(1.1%)	(1.2%)	(-0.4%)	(-0.2%)	(0.2%)
- 마을어업	551	554	519	520	523	510	509	511
- 양식어업	102	105	100	101	102	105	105	105
- 어선어업	225	227	220	224	227	233	233	234
- 복합어업	199	201	186	190	194	194	193	192
- 내수면어업	83	83	83	85	87	86	86	86
참여어업인(명)	71,795	72,626	66,254	66,223	66,238	65,637	63,777	62,994
(전년대비 증가율,%)	(1.6%)	(1.2%)	(-8.8%)	(0.0%)	(0.0%)	(-0.9%)	(-2.8%)	(-1.2%)
공동체당 평균 구성원수(명)	61.9	62.1	59.8	59.1	58.5	58.2	56.6	55.8

□ 시·도별 참여공동체 현황

구 분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1	63	1	6	1	2	7	-	4	5	20	7	8	2
2002	79	2	6	2	2	9	-	5	7	25	8	10	3
2003	122	4	7	3	3	15	-	6	9	28	15	16	6
2004	174	5	8	5	7	16	-	13	10	53	23	19	15
2005	308	5	13	10	12	21	5	27	25	99	37	33	21
2006	445	10	15	13	16	28	5	46	27	147	47	60	31
2007	579	15	25	15	23	39	7	49	38	184	69	76	39
2008	659	15	29	15	24	47	8	50	41	215	73	100	42
2009	758	18	36	16	24	58	12	63	41	236	78	134	42
2010	863	21	40	18	29	71	16	74	41	258	87	163	45
2011 (어업인수)	932 (63,860)	25 (1,990)	43 (3,374)	20 (1,744)	32 (2,073)	82 (5,499)	17 (339)	82 (7,029)	44 (3,137)	271 (19,445)	91 (4,888)	177 (9,165)	48 (5,177)
2012	989 (66,410)	28 (2,104)	50 (3,772)	20 (1,740)	34 (2,137	82 (5,429)	17 (348)	91 (7,417)	46 (3,188)	289 (20,200)	97 (5,256)	180 (9,153)	55 (5,666)
2013	1,039 (67,687)	31 (2,188)	53 (3,970)	21 (1,775)	36 (2,115)	84 (5,521)	18 (351)	99 (7,927)	50 (3,308)	293 (20,426)	106 (5,513)	193 (9,564)	55 (5,029)
2014	1,086	33	54	22	36	89	19	107	53	301	112	203	57
2014	(69,098)	(2,257)	(4,107)	(1,792)	(2,124)	(5,526)	(380)	(8,170)	(3,557)	(20,719)	(5,274)	(9,970)	(5,222)
2015	1,131	35	55	22	39	93	20	115	55	305	113	222	57
2013	70,672	(2,390)	(4,282)	(1,840)	(2,228)	(5,666)	(377)	(8,681)	(3,540)	(20,645)	(5,633)	(10,509)	(4,881)
2016	1,160	37	55	23	39	93	22	123	56	308	117	230	57
2010	71,795	(2,535)	(4,282)	(1,860)	(2,232)	(5,666)	(388)	(9,156)	(3,573)	(20,745)	(5,748)		(4,881)
2017	1,170	37	55	23	38	95	21	128	56	312	117	231	57
2017	72,626	(2,580)	(4,282)	(1,769)	(2,349)	(5,536)	(326)	(9,507)	(3,573)	(21,025)	(5,674)	` ' '	(5,321)
2018	1,108	35	53	23	38	87	21	114	56	283	116		52
2010	66,254	(2,517)	(4,211)	(1,769)	(2,349)	(5,035)	(326)	(8,319)	(3,549)	(17,581)	(5,727)	(9,965)	(4,906)
2019	1,120	35	53	23	40	87	21	115	57	284	116		52
2013	66,223	(2,517)	(4,211)	(1,778)	(2,414)	(4,903)	(322)	(8,382)	(3,654)	(17,587)	(5,486)	` ' '	(4,905)
2020	1,133	36	43	24	40	89	21	120	57	287	118		52
2020	64,893	(2,402)	(3,841)	(1,682)	(2,444)	(4,948)	(304)	(8,977)	(3,654)	(17,722)	(5,382)	(9,977)	(3,560)
2021	1,128	36	43	24	40	89	21	121	56	297	100	249	52
LOLI	65,637	(2,386)	(3,820)	(1,597)	(2,447)	(4,948)	(293)	(9,075)	(3,582)	, ,	(4,592)	(9,949)	(4,933)
2022	1,126	36	43	24	40	89	21	124	57	296	100	249	47
	63,777	(2,386)	(3,820)	(1,590)	(2,476)	(4,637)	(292)	(9,736)	(3,720)	(17,950)	(3,712)	(9,952)	(3,506)
2023.10	1,128	36	43	24	40	89	20	123	57	296	100		46
2023.10	62,994	(2,386)	(3,791)	(1,597)	(2,468)	(4,554)	(296)	(9,261)	3,546	(17,970)	(3,712)	(9,937)	(3,476)